

DMZ통일연구원 규정

개정 2014. 4. 1 제정 2010. 12. 7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원은 “경동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한다) 부설 DMZ 통일연구원 Institute of DMZ & Unification”(이하“연구원”)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하고 통일정책분야의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에 학문적,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외 통일관련 연구실태, 의식조사와 분석 및 통일관련 정책의 개발
2. 통일에 관한 교육 및 연수
3. 정기간행물의 출판과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에 정책자문 활성화
4. 학술용역사업(학제적 연구 프로젝트)의 수행
5. 통일관련 학술행사와 관련 연구자들의 지적 네트워킹 강연회, 간담회 개최
6. 기타 본 연구원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의 수행

제4조 (위치) 본 연구원은 본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 직

제5조 (구성) ①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연구원장
2. 운영위원
3. 연구센터장
4. 연구팀장
5. 연구교원 등 (연구원, 조교, 사무직원)

② 본 연구원의 분야별 연구 활동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를 둘 수 있다. 센터의 명칭은 “DMZ 통일연구원 ○○센터”로 한다.

제6조(연구원장) ① 연구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본 연구를 통할한다.

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운영위원) ①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연구팀장) ① 본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팀(실)을 두며, 그 책임자인 연구팀장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팀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
③ 연구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(연구교원, 연구원 및 조교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교원, 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교원과 연구원, 조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 (사무직원) 본 연구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하여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1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. 연구원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정기회의 1회와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. 회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결정
2. 본 연구원의 제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3.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심의
4. 기타 본 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

제4장 재 정

제12조 (재정) 이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1. 정부, 지자체, 산업체의 연구비
2.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(교육운영, 연구용역 등)
3. 교비의 지원
4.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과 기부금
5. 기타 수입으로 함.

제13조 (수입과 지출)

① 연구원의 모든 수입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예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모든 지출은 관리부서와 운영위원회의 통제 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 (예산 및 결산) ①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원장이 집행한다.

②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연구원장은 매년 모든 연구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,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5조 (폐지) 이 연구원을 폐지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